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81 호
----------	---------

제출년월일 : '99. 10 . 1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법의 개정예 의거 과오납된 점용료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시설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등을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함(안 제6조의 3)
- 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때 점용료 전액 감면 사항 신설(안 제8조제3항)
- 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용휴대전화기지국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 기능을 강화토록 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 도로법중 개정 관련 (법률 제5,894호 : '99. 2. 8)
-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6,510호 : '99. 8. 6)
- 도로58710-1170('99.9.7) : 도로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4. 본 문 : 붙임과 같 음.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 1.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
- 4.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감면한다.

【별표 1】 제1호(전주·공중전화·송전답·기타 이와 유사한 것)란 및 제2호(수도관·하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란의 점용물의 종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의3(과오납금의 반환) 신설</p>	<p>제6조의3(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p>
<p>제8조(점용료의감면) ① ~ ② (생략) ③ (생략)</p> <p>1. 제1항의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4. 신설</p>	<p>제8조(점용료의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감면한다.</p>
<p><u>【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5조관련)</u></p>	<p><u>【별표 1】 별지와 같이 한다.</u></p>

【별표 1】

(현행)

1. 전주·공중전화 송전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 관·전기관·전 기통신관·가스 관·송유관·기 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지름 0.1미터 이하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지름 1.0미터 초과
		기타의 관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지름 1.0미터 초과	

별표 1 비고 제4호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1】

(개 정 안)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지름 1.0미터 초과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지름 1.0미터 초과	

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